

의안번호	2211180
의 퇴 인	장철민 의원
회 답 일	2025. 8. 21.
추 계 번호	25A3528
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(첨단산업인재 혁신진흥원의 설립)	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설립(제1항)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(제2항 및 제3항)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음(제6항)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(제8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4조(첨단산업인재 혁신진흥원의 설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)을 설립하고, 정부가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
 - 현행법은 공공기관 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기존 공공기관에 전담 조직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¹⁾
- 진흥원이 새로 설립되고 정부가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현행법 제14조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 내 설치되어 현재 총 8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된 2025년도 정부 예산은 15억원임
 - * [참고자료 1] 현행법에 근거하여 실시 중인 사업 예산 현황
(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운영 포함)
 - 개정안에 따라 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보다 전담 인력의 수가 확대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금 예산 또한 증액될 수 있으므로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1) 신·구조문대비표(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인재혁신센터의 설치) ① <u>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(이하 “인재혁신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</u>	제14조(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의 설립) ① <u>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u>
<신 설>	② <u>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</u>
<신 설>	③ <u>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/u>

- 개정안의 재정소요는 진흥원의 설립 규모와 사업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,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진흥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지원 규모는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, 이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의 운영 규모(정원, 직급 및 고용형태 등)와 사업 범위를 가정할 수 있어야 함
 - 그러나 진흥원의 운영 규모 추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급별·고용형태별 정원 및 인건비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며, 사업 범위 또한 기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수행 중인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하게 실시할지 또는 신규 사업 등을 확대 실시할지 알 수 없으므로 출연금 지원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로 지정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, 개정안에 따라 설립될 진흥원의 조직 규모는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
 - 이에 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 - 참고로, 진흥원 설립 시 소요 비용을 가늠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,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7개 기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들의 임직원 수는 105~916명, 인건비 예산(2025년도)은 69~1,071억원 수준임
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현재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,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개정안에 따른 진흥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중이며, 그 밖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5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산업 분야 기타공공기관이므로 유사한 사례로서 참고 가능
- * [참고자료 2]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예산 현황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 1] 현행법에 근거하여 실시 중인 사업 예산 현황
(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운영 포함)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(회계, 코드) ▶내역-내내역사업명	사업 내용	2025년도 예산(2차추경)
반도체아카데미구축 (일반회계, 3161-329)	예비취업자, 재직자 등 대상으로 산업계 주도 반도체 파운드리형 Design 교육, 장비·부품 및 패키징 교육 실시	5,170 ¹⁾
배터리아카데미구축 (일반회계, 3161-331)	예비취업자, 재직자 등 대상으로 산업계 주도 배터리 설계·제조·공정 교육, 소재 및 부품 설계·제조·공정 교육 등을 실시	6,000
디스플레이아카데미구축 (일반회계, 3161-333)	예비취업자, 재직자 등 대상으로 산업계 주도 소재 부품 및 장비 R&D·설계 교육,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직무전환 및 IT·SW 융합 교육 실시	3,700
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R&D) (일반회계, 3161-315)	—	166,145
▶ 정책기반	—	8,125
— 첨단산업인재혁신촉진	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필수기능 수행 (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운영 예산)	1,500 ²⁾
대한무역투자공사 (일반회계, 1139-310)	—	329,290
▶ 현지진출기반조성	—	24,216
— 해외전문인력유치	첨단분야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유치	977

주: 1) 본예산 4,170백만원, 1차추경 1,000백만원

2) 인건비 400백만원, 사업비 1,100백만원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[참고자료 2]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예산 현황

(단위: 명, 백만원)

연번	기관명	소재	임직원 수				2025년도 예산 ¹⁾			
			임원(A)	직원		합계 (A+B+C)	인건비(D)	경상운영비(E)	사업비(F)	합계 (D+E+F)
				정규직(B)	무기계약직(C)					
1	한국산업기술진흥원	서울	1	391	43	435	41,552	13,212	1,988,638	2,043,402
2	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	충북	— ²⁾	111	10	121	9,990	1,691	18,632	30,313
3	한국디자인진흥원	경기	1	138	48	187	10,678	1,329	51,615	63,622
4	한국로봇산업진흥원	대구	1	79	45	125	6,916	5,005	149,214	161,135
5	한국산업기술시험원	경남	1	486	429	916	107,119	13,288	109,109	229,516
6	한국세라믹기술원	경남	1	143	91	235	8,909	6,336	76,005	91,250
7	한국탄소산업진흥원	전북	1	104	—	105	12,102	4,435	42,085	58,622

주: 1) 각 기관의 예산 중 차입상환금과 기타 예산은 제외되어 있음

2)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으로 별도 임원 없음

1.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ALIO) 공시 정보(경영성과-재무성과-수입·지출현황) 기준